



의안번호	제53호
------	------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2. 4. 13.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3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4. 13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개정이유(배경·필요성)

자동차세에 관한 신고사무처리 근거 법령 변경 결과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자동차·이륜차 등록사무 규정 변경 (안 제4조)

개정전	개정후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	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2. 25. ~ 2022. 3. 16

나) 예고결과 : 예고 후 반영

5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세정과 (041-635-3637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”을 “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·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규정에 따른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세 무 과 장	임 성 영
	지 방 소 득 세 팀 장	김 종 현 (746-5441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- 해당없음

나. 추계결과

- 해당없음

3. 작성자

세무과장 임성영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자동차등록령」 【시행 2021.11.16.】 【대통령령 제32122호】

제5조(등록사무의 관할 등) ① 등록에 관한 사무(이하 “등록사무”라 한다)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등록관청”이라 한다)가 관할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[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
□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99조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)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·면장·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
2.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(신규로 제작·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)
- 2의2.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
3.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(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)
4.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(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·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③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등록번호”는 “이륜자동차번호”로, “말소등록”은 “사용폐지신고”로, “등록번호판”은 “이륜자동차번호판”으로, “신규등록”은 “사용신고”로 본다.

- ④ 삭제